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변경 실시 협약 (2차)

2021. 04. 30

국 토 교 통 부
이 레 일 주식회사



변경실시협약(2차)

대한민국 정부(국토교통부)와 이레일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는 2010년 12월 21일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위한 실시협약과 2011년 3월 21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사업에 대한 일부 운영의 범위가 변경되어 운영비 등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협약의 일부를 변경한다.

제1조 정의

① 이 변경실시협약(2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변경실시협약(2차)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한, 실시협약 및 변경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② 실시협약 제3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p>제3조 (정의)</p> <p>- “건설기간” 이라 함은 이 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p> <p>- “공사감리자” 라 함은 주무관청에 의해 지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에 정해진 책임감리를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해 지정된 책임관리자(또는 동법 제22조의 2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p>	<p>제3조 (정의)</p> <p>- “건설기간” 이라 함은 <u>최초 실시협약 체결일</u>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p> <p>- “공사감리자” 라 함은 <u>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정해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u>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p>

<p>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규정된 감리 전문회사)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한다.</p> <p>-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p> <p>- “본 사업” 이라 함은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p> <p>- “본 사업부지” 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p> <p>- “사업기간” 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구분된다.</p> <p>- “사업년도” 라 함은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년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년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p>	<p>을 포함한다.</p> <p>-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u>그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u></p> <p>- “본 사업” 이라 함은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u>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u></p> <p>- “본 사업부지” 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u>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u></p> <p>- “사업기간” 이라 함은 <u>최초 실시협약</u>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구분된다.</p> <p>- “사업년도” 라 함은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년도의 경우에는 <u>최초 실시협약</u> 협약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년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u>유지관리 및 운</u></p>
--	--



<p>다.</p> <p>- “성과평가위원회” 라 함은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본 협약 제54조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p> <p>- “운영비” 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 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p> <p>- “유지관리” 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p>	<p>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p> <p>- “성과평가위원회” 라 함은 본 사업의 <u>유지관리 및 운영</u>에 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 제54조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p> <p>- “운영비” 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서 인건비, <u>유지관리비(전력비 포함)</u>, 운영설비 대체비, <u>보험료</u>, 부대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p> <p>(<u>신설</u>) “전력비” 라 함은 정거장 등의 전기료와 운전운행(타사업의 운전운행 제외)에 필요한 동력비 일체를 말한다.</p> <p>(<u>신설</u>) “역무업무” 라 함은 역(장래역인 하중역 제외)에 인력을 투입하여 고객응대, 운임징수 및 정산, 역사 내 시설의 모니터링, 문제발생 시 초기대응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서비스를 말한다.</p> <p>- “유지관리” 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 [<u>정거장 청소, 운영설비 대체 포함(역 운영 설비 대체도 포함한다.)</u>]하며, 시</p>
---	---



에 따른 수요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주무관청에 있다.	속되며, 본 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요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주무관청에 있다.
-------------------------------	--

③ 실시협약 제32조 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제32조 (민원처리)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시공 및 운영민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의 설계,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제32조 (민원처리)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시공 및 운영민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의 설계, <u>공사 관련 민원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u>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④ 실시협약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제47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1 (성과요구수준서) 및 본 협약 제46조의 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이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47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1 (성과요구수준서) 및 본 협약 제46조의 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이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본 사업시설을 <u>유지관리 및 운영</u> 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p>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로 하여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p> <p>④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이 필요하고 인정하여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u>유지관리 및 운영</u> 등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로 하여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p> <p>④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u>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u>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	---

⑤ 실시협약 제50조 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p>제50조 (경미한 사업)</p> <p>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 체결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제50조 (경미한 사업)</p> <p>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u>철도운영자의 역운영</u>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 체결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⑥ 실시협약 별표1(본 사업의 개요 및 범위)의 내용을 이 변경실시협약(2차)에 첨부된 별표1(본 사업의 개요 및 범위)의 내용으로 변경한다.

⑦ 실시협약 별표11(관리운영권의 인계)의 내용을 이 변경실시협약(2차)에 첨부된 별표11(관리운영권의 인계)의 내용으로 변경한다.

제3조 운영비의 변경

① 실시협약 제42조 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p>제42조 (운영비의 결정 등)</p> <p>① 제61조에 따라 산정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의 표준비용(2006년 6월 1일 기준 불변 운영비)은 금299,715백만원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10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와 같다.</p>	<p>제42조 (운영비의 결정 등)</p> <p>① 제61조에 따라 산정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의 표준비용(2006년 6월 1일 기준 불변 운영비)은 <u>금256,909백만원</u>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10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와 같다.</p>

② 변경실시협약 별표10(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의 내용을 이 변경실시협약(2차)에 첨부된 별표10(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의 내용으로 변경한다.



제4조 개정된 법규명 적용

① 실시협약 제13조 7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p>제13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p> <p>⑦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p>	<p>제13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p> <p>⑦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u>건설기술진흥법</u>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p>

<p>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 민간 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p>	<p>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 민간 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p>
---	---

② 실시협약 제33조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p>제33조 (환경 및 안전관리)</p> <p>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 시공을 위한 안전관리 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3조 (환경 및 안전관리)</p> <p>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 시공을 위한 안전관리 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u>건설기술진흥법</u> 및 <u>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u>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p>

③ 실시협약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p>제34조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p> <p>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실시설계와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른 설계감리를 시행하고, 주무관청(주무관청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감리를 감독한다.</p> <p>②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업체인 설계감리자 및 책임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p>	<p>제34조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p> <p>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실시설계와 <u>건설기술진흥법</u> 등에 따른 설계감리를 시행하고, 주무관청(주무관청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감리를 감독한다.</p> <p>② 주무관청은 <u>건설기술진흥법</u>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업체인 설계감리자 및 책임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p>

주무관청이 선정한 설계감리자 및 책임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금액은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감리자 선정 시의 최종낙찰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설계감리자 및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설계 및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의 부록1(성과요구수준서)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감리업무 및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설계감리자 및 책임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④ 설계감리자 및 책임감리자는 설계감리업무 및 책임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감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설계감리자는 본 사업시설 설계에 대하여 본 협약의 부록1 (성과요구수준서)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설계의 시행 전반에 대하여 감리하며,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설계용역에 대한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도 또한 같다.

주무관청이 선정한 설계감리자 및 책임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금액은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감리자 선정 시의 최종낙찰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설계감리자 및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설계 및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의 부록1(성과요구수준서)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감리업무 및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설계감리자 및 책임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④ 설계감리자 및 책임감리자는 설계감리업무 및 책임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제반 감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설계감리자는 본 사업시설 설계에 대하여 본 협약의 부록1 (성과요구수준서)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설계의 시행 전반에 대하여 감리하며,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설계용역에 대한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실시협약의 효력 변경

실시협약의 내용은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변경 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 다만,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본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변경실시협약의 효력발생

이 변경실시협약은 소사~원시 구간의 운영체제 개편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1년 4월 30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무성



이레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토문



변경실시협약(2차)

별

표



【별표 1】

본 사업의 개요 및 범위

본 사업 및 사업시설의 범위는 사업시행자가 2008년 8월 25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합의된 변경사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다.

1. 본 사업의 범위

사업시행자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설계와 시공, 일부 범위에 대한 유지관리(관리운영권 20년) 책임을 진다.

2. 본 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구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운영	· 주무관청의 업무를 제외한 · 관련업무 전체	· 통합관계 · 역무업무 · 운임징수 및 정산 · 열차 운영(운전승무 및 운전취급) · 차량제공, 차량 검수정비
노반	· 관련업무 전체	
건물	· 관련업무 전체	
궤도	· 관련업무 전체	
전차선·전력	· 관련업무 전체	
신호	· 관련업무 전체	
통신	· 관련업무 전체	
부대(부속)시설	· 관련업무 전체	

※ 환승역인 소사역 및 화랑역은 지하 승강장~지상맞이방층으로 올라오는 계단까지(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포함)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

【별표 10】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

1. 운영비의 구성

(단위 : 백만원, VAT별도)

구분	운영기간(20년) 중 예산	비고
1. 인건비	62,513	
2. 체경비	37,123	
3. 유지관리비	149,913	
3.1 유지보수비	134,329	
구조물 점검비	14,306	
궤도 점검비	616	
시스템 점검비	2,996	
시설물 유지보수비	67,244	
유지관리계측시스템	101	
전력비	49,066	
3.2 보험료	15,585	
재물손해및제3자배상책임	12,991	
기업휴지보험	2,446	
사용자배상책임보험	147	
4. 대체비	7,360	
4.1 운영설비대체비	6,260	
4.2 집기비품대체비	1,100	
사무집기 등(개인용)	644	
사무집기 등(공용)	150	
차량구입비	306	
합계	256,909	

- ※ 1) 운영비는 불변가격(가격산정기준일: 2006.06.01) 기준임.
- 2) 연계선구의 신설 등에 따른 정부의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대체시설비(궤도대체비 포함)는 향후 발생 시 추가 반영함.
- 3) 운영체계 개편에 따라 역운영 관련 비용은 제외된 금액이며, '18.2분기~'21.2분기(4월분까지) 기간은 지급스케줄에 역운영비를 반영함('18.2분기는 개통시점('18.06.16)에 따라 15일분 반영함.

2. 운영비의 지급스케줄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도	분기	불변금액	경상금액	연도	분기	불변금액	경상금액
2018	1	-	-	2024	1	3,122	5,249
	2	618	876		2	3,122	5,288
	3	3,746	5,355		3	3,122	5,327
	4	3,746	5,394		4	3,122	5,367
2019	1	3,746	5,434	2025	1	3,122	5,407
	2	3,746	5,475		2	3,122	5,447
	3	3,746	5,515		3	3,122	5,487
	4	3,746	5,556		4	3,122	5,528
2020	1	3,746	5,597	2026	1	3,122	5,569
	2	3,746	5,639		2	3,122	5,610
	3	3,746	5,681		3	3,122	5,652
	4	3,746	5,723		4	3,122	5,694
2021	1	3,746	5,765	2027	1	3,122	5,736
	2	3,330	5,162		2	3,122	5,778
	3	3,122	4,875		3	3,122	5,821
	4	3,122	4,911		4	3,122	5,864
2022	1	3,122	4,948	2028	1	3,122	5,908
	2	3,122	4,985		2	3,122	5,952
	3	3,122	5,022		3	3,122	5,996
	4	3,122	5,059		4	3,122	6,040
2023	1	3,122	5,096	2029	1	3,122	6,085
	2	3,122	5,134		2	3,122	6,130
	3	3,122	5,172		3	3,122	6,176
	4	3,122	5,211		4	3,122	6,222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도	분기	불변금액	경상금액	연도	분기	불변금액	경상금액
2030	1	3,122	6,268	2035	1	3,122	7,266
	2	3,122	6,314		2	3,122	7,320
	3	3,122	6,361		3	3,122	7,374
	4	3,122	6,408		4	3,122	7,429
2031	1	3,122	6,456	2036	1	3,122	7,484
	2	3,122	6,504		2	3,122	7,540
	3	3,122	6,552		3	3,122	7,596
	4	3,122	6,601		4	3,122	7,652
2032	1	3,122	6,650	2037	1	3,122	7,709
	2	3,122	6,699		2	3,122	7,766
	3	3,122	6,749		3	3,122	7,823
	4	3,122	6,799		4	3,122	7,881
2033	1	3,122	6,849	2038	1	3,122	7,940
	2	3,122	6,900		2	2,607	6,680
	3	3,122	6,951		3		
	4	3,122	7,003		4	-	-
2034	1	3,122	7,054	합계(20년)		256,909	494,974
	2	3,122	7,107				
	3	3,122	7,159				
	4	3,122	7,213				

※ 운영비 경상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3%를 반영한 기준으로 향후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변경 예정임

【별표 11】

관리운영권의 인계

시 설 물 인 계	비 고
○ 본 협약에서 정한 시설물의 인계 : 1식	
○ 설계 및 시공부문 성과요구수준서에 정한 내용 : 1식	
○ 유지관리 및 운영부문 성과요구수준서에 정한 내용 : 1식	
○ 유지관리지침서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 특기사항 등	
○ 기타 상호 협의된 내용	


변경 실시 협약(2차) 부 록




성과요구수준서
변경사항


현행	변경	사유																																																																					
I. 설계 및 시공부문 성과요구수준서	I. 설계 및 시공부문 성과요구수준서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설계 및 시공부문 성과요구수준서는 국토해양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관련된 제반 요구수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 목적 본 설계 및 시공부문 성과요구수준서는 국토교통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관련된 제반 요구수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설명서	2. 사업설명서																																																																						
2.1 사업개요	2.1 사업개요																																																																						
(2) 위치 ④ 본선 시종점 위치 및 좌표 주) 좌표는 GRS80 사용, Z값의 수준기면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정한 표고 0m를 100m로 한다.	(2) 위치 ④ 본선 시종점 위치 및 좌표 주) 좌표는 GRS80 사용, Z값의 수준기면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정한 표고 0m를 100m로 한다.																																																																						
2.2 시설개요	2.2 시설개요	실역명 반영																																																																					
2.2.2 궤도	2.2.2 궤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시설개요</th> </tr> </thead> <tbody> <tr> <td>궤도부설</td> <td>52km138 (입출고선 포함)</td> </tr> <tr> <td>정거장</td> <td>12개소 (소사, 복사, 대야, 신천, 신현, 시흥시청, 연성, 석수골, 선부, 화랑, 원곡, 원시)</td> </tr> </tbody> </table>	구분	시설개요	궤도부설	52km138 (입출고선 포함)	정거장	12개소 (소사, 복사, 대야, 신천, 신현, 시흥시청, 연성, 석수골, 선부, 화랑, 원곡, 원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시설개요</th> </tr> </thead> <tbody> <tr> <td>궤도부설</td> <td>52km138 (입출고선 포함)</td> </tr> <tr> <td>정거장</td> <td>12개소 (소사, <u>소새울</u>, <u>시흥대야</u>, 신천, 신현, 시흥시청, <u>시흥능곡</u>, 달미, 선부, 초지, 원곡, 원시)</td> </tr> </tbody> </table>	구분	시설개요	궤도부설	52km138 (입출고선 포함)	정거장	12개소 (소사, <u>소새울</u> , <u>시흥대야</u> , 신천, 신현, 시흥시청, <u>시흥능곡</u> , 달미, 선부, 초지, 원곡, 원시)																																																										
구분	시설개요																																																																						
궤도부설	52km138 (입출고선 포함)																																																																						
정거장	12개소 (소사, 복사, 대야, 신천, 신현, 시흥시청, 연성, 석수골, 선부, 화랑, 원곡, 원시)																																																																						
구분	시설개요																																																																						
궤도부설	52km138 (입출고선 포함)																																																																						
정거장	12개소 (소사, <u>소새울</u> , <u>시흥대야</u> , 신천, 신현, 시흥시청, <u>시흥능곡</u> , 달미, 선부, 초지, 원곡, 원시)																																																																						
2.2.3 건물	2.2.3 건물	실역명 반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복사역사</th> <th>대야역사</th> <th>연성역사</th> </tr> </thead> <tbody> <tr> <td>위치</td> <td>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td> <td>경기도 시흥시 대야동</td> <td>경기도 시흥시 능곡동</td> </tr> <tr> <td>기능</td> <td>여객취급</td> <td>여객취급</td> <td>여객취급</td> </tr> <tr> <td>여객열차취급현황</td> <td>전동차</td> <td>전동차</td> <td>전동차</td> </tr> <tr> <td>평균승강인원 (인/일)</td> <td>19,343</td> <td>19,790</td> <td>17,249</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석수골역사</th> <th>화랑역사</th> </tr> </thead> <tbody> <tr> <td>위치</td> <td>경기도 안산시 선부동</td> <td>경기도 안산시 초지동</td> </tr> <tr> <td>기능</td> <td>여객취급</td> <td>여객취급</td> </tr> <tr> <td>여객열차취급현황</td> <td>전동차</td> <td>전동차</td> </tr> <tr> <td>평균승강인원 (인/일)</td> <td>15,907</td> <td>60,963 (환승포함)</td> </tr> </tbody> </table>	구분		복사역사	대야역사	연성역사	위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기능	여객취급	여객취급	여객취급	여객열차취급현황	전동차	전동차	전동차	평균승강인원 (인/일)	19,343	19,790	17,249	구분	석수골역사	화랑역사	위치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기능	여객취급	여객취급	여객열차취급현황	전동차	전동차	평균승강인원 (인/일)	15,907	60,963 (환승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소새울역사</th> <th>시흥대야역사</th> <th>시흥능곡역사</th> </tr> </thead> <tbody> <tr> <td>위치</td> <td>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td> <td>경기도 시흥시 대야동</td> <td>경기도 시흥시 능곡동</td> </tr> <tr> <td>기능</td> <td>여객취급</td> <td>여객취급</td> <td>여객취급</td> </tr> <tr> <td>여객열차취급현황</td> <td>전동차</td> <td>전동차</td> <td>전동차</td> </tr> <tr> <td>평균승강인원 (인/일)</td> <td>19,343</td> <td>19,790</td> <td>17,249</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달미역사</th> <th>초지역사</th> </tr> </thead> <tbody> <tr> <td>위치</td> <td>경기도 안산시 선부동</td> <td>경기도 안산시 초지동</td> </tr> <tr> <td>기능</td> <td>여객취급</td> <td>여객취급</td> </tr> <tr> <td>여객열차취급현황</td> <td>전동차</td> <td>전동차</td> </tr> <tr> <td>평균승강인원 (인/일)</td> <td>15,907</td> <td>60,963 (환승포함)</td> </tr> </tbody> </table>	구분	소새울역사	시흥대야역사	시흥능곡역사	위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기능	여객취급	여객취급	여객취급	여객열차취급현황	전동차	전동차	전동차	평균승강인원 (인/일)	19,343	19,790	17,249	구분	달미역사	초지역사	위치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기능	여객취급	여객취급	여객열차취급현황	전동차	전동차	평균승강인원 (인/일)	15,907
구분	복사역사	대야역사	연성역사																																																																				
위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기능	여객취급	여객취급	여객취급																																																																				
여객열차취급현황	전동차	전동차	전동차																																																																				
평균승강인원 (인/일)	19,343	19,790	17,249																																																																				
구분	석수골역사	화랑역사																																																																					
위치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기능	여객취급	여객취급																																																																					
여객열차취급현황	전동차	전동차																																																																					
평균승강인원 (인/일)	15,907	60,963 (환승포함)																																																																					
구분	소새울역사	시흥대야역사	시흥능곡역사																																																																				
위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기능	여객취급	여객취급	여객취급																																																																				
여객열차취급현황	전동차	전동차	전동차																																																																				
평균승강인원 (인/일)	19,343	19,790	17,249																																																																				
구분	달미역사	초지역사																																																																					
위치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기능	여객취급	여객취급																																																																					
여객열차취급현황	전동차	전동차																																																																					
평균승강인원 (인/일)	15,907	60,963 (환승포함)																																																																					

현행	변경	사유				
<p>3. 설계</p> <p>3.1 일반사항</p>	<p>3. 설계</p> <p>3.1 일반사항</p>					
<p>3.1.1 설계자료 공개</p>	<p>3.1.1 설계자료 공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공개자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반, 궤도, 건물, 전차선, 전력(송변전 포함), 신호, 통신분야 기본설계도서 1식 · 역사 전력 및 통신분야 기본설계도서 1식(대야, 신천, 신현, 시흥시청, 연성, 선부) ·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수준) 1식 · 문화재지표조사 1식 · 각종 협의자료 1식 </td> </tr> </table>	공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반, 궤도, 건물, 전차선, 전력(송변전 포함), 신호, 통신분야 기본설계도서 1식 · 역사 전력 및 통신분야 기본설계도서 1식(대야, 신천, 신현, 시흥시청, 연성, 선부) ·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수준) 1식 · 문화재지표조사 1식 · 각종 협의자료 1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공개자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반, 궤도, 건물, 전차선, 전력(송변전 포함), 신호, 통신분야 기본설계도서 1식 · 역사 전력 및 통신분야 기본설계도서 1식(시흥대야, 신천, 신현, 시흥시청, 시흥능곡, 선부) ·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수준) 1식 · 문화재지표조사 1식 · 각종 협의자료 1식 </td> </tr> </table>	공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반, 궤도, 건물, 전차선, 전력(송변전 포함), 신호, 통신분야 기본설계도서 1식 · 역사 전력 및 통신분야 기본설계도서 1식(시흥대야, 신천, 신현, 시흥시청, 시흥능곡, 선부) ·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수준) 1식 · 문화재지표조사 1식 · 각종 협의자료 1식 	
공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반, 궤도, 건물, 전차선, 전력(송변전 포함), 신호, 통신분야 기본설계도서 1식 · 역사 전력 및 통신분야 기본설계도서 1식(대야, 신천, 신현, 시흥시청, 연성, 선부) ·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수준) 1식 · 문화재지표조사 1식 · 각종 협의자료 1식 					
공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반, 궤도, 건물, 전차선, 전력(송변전 포함), 신호, 통신분야 기본설계도서 1식 · 역사 전력 및 통신분야 기본설계도서 1식(시흥대야, 신천, 신현, 시흥시청, 시흥능곡, 선부) ·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수준) 1식 · 문화재지표조사 1식 · 각종 협의자료 1식 					
<p>3.1.2 관계 법규 등 제반기준 준수</p>	<p>나. 관계 법규 등 제반기준 준수</p>					
<p>(2)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가장 최근(고시일 기준)의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며, 고시 이후 본 사업관련 법령, 지침, 규칙, 시방서 등 재·개정 사항 발생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p>	<p>(2)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가장 최근(고시일 기준)의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며, 고시 이후 본 사업관련 법령, 지침, 규칙, 시방서 등 재·개정 사항 발생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p>					
<p>① 관련법규</p>	<p>(가) 관련법규</p>					
<p>가) 철도관계법령 및 관련 규칙, 지침 (국토해양부)</p>	<p>가) 철도관계법령 및 관련 규칙, 지침 (국토교통부)</p>					
<p>나) 철도건설법 및 동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p>	<p>나) <u>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동시행령·시행규칙</u> (국토교통부)</p>	<p>최근 규정류 및 기관명 반영</p>				
<p>다) 건설산업기본법·동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p>	<p>다) 건설산업기본법·동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p>					
<p>라) 건설기술관리법·동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p>	<p>라) <u>건설기술진흥법·동시행령·시행규칙</u> (국토교통부)</p>					
<p>마) 철도안전법·동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 및 도시철도법·동시행령 (국토해양부)</p>	<p>마) <u>철도안전법·동시행령·시행규칙</u> (국토교통부) 및 도시철도법·동시행령 (국토교통부)</p>					
<p>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동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p>	<p>바) <u>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동시행령·시행규칙</u> (국토교통부)</p>					
<p>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p>	<p>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p>					
<p>아)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p>	<p>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p>					
<p>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p>	<p>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p>					

현행	변경	사유
<p>보장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가족부)</p> <p>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해양부)</p> <p>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p> <p>하)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국토해양부)</p> <p>너)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국토해양부) 및 관련규정 등</p> <p>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의한 법률 (소방방재청)</p> <p>러) 철도사업법·동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p> <p>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p>	<p>보장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부)</p> <p>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p> <p>파)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p> <p>하)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국토교통부)</p> <p>너)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국토교통부) 및 관련규정 등</p> <p>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청)</p> <p>러) 철도사업법·동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p> <p>버) 승강기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p>	
<p>② 관련시방서 및 기준</p> <p>가) 공통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국토해양부) - 철도건설규칙 (국토해양부)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국토해양부)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해양부)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기타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한국산업규격, 기타공사의 안전, 교통,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지식경제부)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국토해양부) -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 - 에너지관리기준 (지식경제부) - 철도건설자산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지침 (국토해양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p>② 관련시방서 및 기준</p> <p>가) 공통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국토교통부) - 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 기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한국산업규격, 기타공사의 안전, 교통,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산업통상자원부)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국토교통부) -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에너지관리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철도건설자산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현행	변경	사유
<p>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해양부) - 선로·건조물 제도 및 정비지침 (국토해양부) -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국토해양부) -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요령 (국토해양부) - 선로점검지침(국토해양부) 	<p>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 선로·건조물 제도 및 정비지침 (국토교통부) -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국토교통부) -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요령 (국토교통부) - 선로점검지침 (국토교통부) 	
<p>나) 노반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 철도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국토해양부) -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노반편) (국토해양부) -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제기준 (국토해양부)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터널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터널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하천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p>나) 노반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 철도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국토교통부) -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노반편) (국토교통부) -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제기준 (국토교통부)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터널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터널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 하천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p>다) 궤도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공사 전문시방서(궤도편) (국토해양부) - 분기기 정규도 및 표준도 (한국철도시설공단) - 선로정비지침 (국토해양부) - 레일용접 관련지침 (국토해양부) - 보선작업지침(국토해양부) - PC침목 설계시방서(국토해양부) 	<p>다) 궤도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공사 전문시방서(궤도편) (국토교통부) - 분기기 정규도 및 표준도 (국토교통부) - 선로정비지침 (국토교통부) - 레일용접 관련지침 (국토교통부) - 보선작업지침 (국토교통부) - PC침목 설계시방서 (국토교통부) 	
<p>라) 건축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p>라) 건축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현행	변경	사유
<p>(국토해양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p>마) 전력 및 신호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철전력 시설지침 (국토해양부) -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전철전력설비 및 정보통신설비 공사 설계 표준 (국토해양부) - 전기설비 기술기준 (지식경제부) -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지식경제부) - 신호제어설비유지보수지침 (국토해양부) <p>바) 통신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통신설비시설지침 (국토해양부) <p>사) 운전 및 역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해양부) - 비상대응계획시행지침(한국철도공사) - 속도정수 사정기준 규정(한국철도공사) -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지침 (한국철도공사) - 운전보안장치 및 운전장표 취급지침 (한국철도공사) - 운전취급지침(한국철도공사) - 철도안전관리규정(한국철도공사) - 객차비품취급 시행세칙(한국철도공사) - 광역전철 여객영업세칙(한국철도공사) - 광역전철 여객운송약관(한국철도공사) - 광역전철 영업장표관리지침(한국철도공사) - 역명및노선명관리운영규정(한국철도공사) - 철도광고영업지침(한국철도공사) - 철도구내영업운영지침(한국철도공사) 	<p>(국토교통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p>마) 전력 및 신호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철전력 시설지침 (국토교통부) -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 전철전력설비 및 정보통신설비 공사 설계 표준 (국토교통부) - 전기설비 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산업통상자원부) - 신호제어설비유지보수지침 (국토교통부) <p>바) 통신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통신설비시설지침 (국토교통부) <p>사) 운전 및 역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 - 삭제 - 속도정수 사정 및 열차설정 규정 (한국철도공사) -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한국철도공사) - 운전보안장치취급 내규(한국철도공사) - 운전취급내규(한국철도공사) -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한국철도공사) - 객차비품취급 업무지침(한국철도공사) - 광역전철 여객업무편람(한국철도공사) -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한국철도공사) - 삭제 -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 철도광고영업규정(한국철도공사) - 삭제 	

현행	변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구내영업지침(한국철도공사) - 코레일서비스지침(한국철도공사) - 화물수송지침(한국철도공사) - 화물운송세칙(한국철도공사) - 화물전산 및 장표지침(한국철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구내영업규정(한국철도공사) - <u>고객접점 서비스 규정</u>(한국철도공사) - <u>화물수송내규</u>(한국철도공사) - 화물운송세칙(한국철도공사) - 삭제 	
<p>3.1.3 정거장별 설계 고려사항</p> <p>(1) 정거장의 시설규모는 환승(거점)역인 소사 및 화랑정거장은 10량 규모로, 그 외 정거장은 6량 규모로 계획하되, 정거장 기능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적정한 정거장 설비(대합실, 역무실, 공조실, 각종 기능실 등)를 계획하여야 한다.</p> <p>(3) 타 노선과 환승하는 소사(경인선) 및 화랑정거장(안산선)은 시설이용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환승거리 단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운임정산 및 역무업무의 구분을 위하여 환승게이트를 설치한다.</p>	<p>3.1.3 정거장별 설계 고려사항</p> <p>(1) 정거장의 시설규모는 환승(거점)역인 소사 및 <u>초지정거장</u>은 10량 규모로, 그 외 정거장은 6량 규모로 계획하되, 정거장 기능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적정한 정거장 설비(대합실, 역무실, 공조실, 각종 기능실 등)를 계획하여야 한다.</p> <p>(3) 타 노선과 환승하는 소사(경인선) 및 <u>초지정거장</u>(안산선)은 시설이용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환승거리 단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운임정산 및 역무업무의 구분을 위하여 환승게이트를 설치한다.</p>	
<p>3.1.4 실무협상 합의사항의 이행</p> <p>(3) 실무협상에서 합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p> <p>⑦ 기타 합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성역 ~ 석수골역 간 구내변경개소(환기구#17) 지상배수 처리계획 추가 세부검토(지하 용수량 규모 및 집중호우 시 대책) 	<p>3.1.4 실무협상 합의사항의 이행</p> <p>(3) 실무협상에서 합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p> <p>⑦ 기타 합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시흥능곡역 ~ 달미역 간 구내변경개소</u>(환기구#17) 지상배수 처리계획 추가 세부검토(지하 용수량 규모 및 집중호우 시 대책) 	
<p>3.2 노반분야</p>	<p>3.2 노반분야</p>	
<p>3.2.2 세부지침</p> <p>(2) 지반조사 및 시험</p> <p>① 일반사항</p> <p>가) 지반조사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고 제시기준이 상이할 경우 설계·시공부문 성과요구수준서가 우선한다.</p> <p>(3) 토공설계</p> <p>① 일반사항</p>	<p>3.2.2 세부지침</p> <p>(2) 지반조사 및 시험</p> <p>① 일반사항</p> <p>가) 지반조사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고 제시기준이 상이할 경우 설계·시공부문 성과요구수준서가 우선한다.</p> <p>(3) 토공설계</p> <p>① 일반사항</p>	

현행	변경	사유
<p>가) 본 설계·시공부문 성과요구수준서와 철도설계기준(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토공구조물(길내기, 비탈면보호공, 본선부속 등)의 적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p> <p>② 배수시설물 설계</p> <p>나) 신문조사 및 배수설계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홍수량 및 홍수위는 하천설계기준(국토해양부 제정)과 해당하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다. <p>(5) 터널설계</p> <p>⑤ 지보재의 종류 및 특성</p> <p>아) 터널 부대설비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설비 · 터널공사시 굴착 등에 따른 갱내에 누출되는 지하수 및 장비 사용시에 발생된 오·탁수를 정화처리 후 방류토록 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며, 오·탁수 처리수의 수질은 주변환경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수 수질 허용기준 및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p>가) 본 설계·시공부문 성과요구수준서와 철도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토공구조물(길내기, 비탈면보호공, 본선부속 등)의 적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p> <p>② 배수시설물 설계</p> <p>나) 신문조사 및 배수설계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홍수량 및 홍수위는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제정)과 해당하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다. <p>(5) 터널설계</p> <p>⑤ 지보재의 종류 및 특성</p> <p>아) 터널 부대설비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설비 · 터널공사시 굴착 등에 따른 갱내에 누출되는 지하수 및 장비 사용시에 발생된 오·탁수를 정화처리 후 방류토록 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며, 오·탁수 처리수의 수질은 주변환경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u>물환경보전법</u>”의 배출수 수질 허용기준 및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p>3.4 건물분야</p>	<p>3.4 건물분야</p>	
<p>3.4.1 공통사항</p> <p>(3) 타 노선과 환승하는 소사(경인선), 화랑역(안산선)은 노반분야의 공통사항과 같이 승객편의 등을 고려하여 환승거리 단축 및 편의시설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6) 안산선 공단역은 한국철도공사의 연변유희부지개발계획이 있으므로 부대사업 및 부속시설을 계획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철도공사와 충분히 협의 후에 설계를 시행하고, 시공시에도 한국철도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p>	<p>3.4.1 공통사항</p> <p>(3) 타 노선과 환승하는 소사(경인선), <u>초지역(안산선)</u>은 노반분야의 공통사항과 같이 승객편의 등을 고려하여 환승거리 단축 및 편의시설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6) 안산선 <u>초지역</u>은 한국철도공사의 연변유희부지개발계획이 있으므로 부대사업 및 부속시설을 계획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철도공사와 충분히 협의 후에 설계를 시행하고, 시공시에도 한국철도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p>	



현행	변경	사유																												
<p>3.4.2 세부지침</p> <p>(1) 역사 및 전동차승무사업소(본사포함) 설계</p> <p>⑧ 라돈(Rn)의 기준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p>	<p>3.4.2 세부지침</p> <p>(1) 역사 및 전동차승무사업소(본사포함) 설계</p> <p>⑧ 라돈(Rn)의 기준치는 “<u>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u>”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p>																													
<p>3.5 전차선·전력 분야</p>	<p>3.5 전차선·전력 분야</p>																													
<p>3.5.2 세부 시설 개요</p> <p>(2) 변전설비</p> <p>② 보조급전구분소 (소사, 화랑)</p> <p>③ 변전건물</p> <p>■ 보조급전구분소</p> <table border="1" data-bbox="134 797 703 1010">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보조급전구분소</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소사(지하)</th> <th>화랑(지하)</th> </tr> </thead> <tbody> <tr> <td>지하층</td> <td>22.5m×22m = 495[m²]</td> <td>22.5m×22m = 495[m²]</td> <td></td> </tr> <tr> <td>계</td> <td>약 495[m²]이상</td> <td>약 495[m²]이상</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보조급전구분소		비고	소사(지하)	화랑(지하)	지하층	22.5m×22m = 495[m ²]	22.5m×22m = 495[m ²]		계	약 495[m ²]이상	약 495[m ²]이상		<p>3.5.2 세부 시설 개요</p> <p>(2) 변전설비</p> <p>② 보조급전구분소 (소사, <u>초지</u>)</p> <p>③ 변전건물</p> <p>■ 보조급전구분소</p> <table border="1" data-bbox="730 797 1300 1010">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보조급전구분소</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소사(지하)</th> <th><u>초지(지하)</u></th> </tr> </thead> <tbody> <tr> <td>지하층</td> <td>22.5m×22m = 495[m²]</td> <td>22.5m×22m = 495[m²]</td> <td></td> </tr> <tr> <td>계</td> <td>약 495[m²]이상</td> <td>약 495[m²]이상</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보조급전구분소		비고	소사(지하)	<u>초지(지하)</u>	지하층	22.5m×22m = 495[m ²]	22.5m×22m = 495[m ²]		계	약 495[m ²]이상	약 495[m ²]이상		
구분		보조급전구분소			비고																									
	소사(지하)	화랑(지하)																												
지하층	22.5m×22m = 495[m ²]	22.5m×22m = 495[m ²]																												
계	약 495[m ²]이상	약 495[m ²]이상																												
구분	보조급전구분소		비고																											
	소사(지하)	<u>초지(지하)</u>																												
지하층	22.5m×22m = 495[m ²]	22.5m×22m = 495[m ²]																												
계	약 495[m ²]이상	약 495[m ²]이상																												
<p>3.5.3 세부지침</p> <p>(3) 전력설비</p> <p>① 일반방향</p> <p>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에 의거 대체에너지 도입 관계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p>	<p>3.5.3 세부지침</p> <p>(3) 전력설비</p> <p>① 일반방향</p> <p>바)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u>에 의거 대체에너지 도입 관계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p>																													
<p>4. 시공</p>	<p>4. 시공</p>																													
<p>4.1 일반사항</p> <p>4.1.2 법규</p> <p>(1) 본 사업의 시공은 계약문서, 관련 법·령·시행규칙 그리고 정부제정 각종 시행서 및 기준과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에 의거 시행하며 해석한다.</p> <p>(2) 주요 관련법령 및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과 상이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규정이 우선한다.</p> <p>- 철도관계법령 및 관련 규칙, 지침(국토해양부)</p>	<p>4.1 일반사항</p> <p>4.1.2 법규</p> <p>(1) 본 사업의 시공은 계약문서, 관련 법·령·시행규칙 그리고 정부제정 각종 시행서 및 기준과 <u>국토교통부</u>가 제정한 각종 지침에 의거 시행하며 해석한다.</p> <p>(2) 주요 관련법령 및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과 상이할 경우에는 <u>국토교통부</u>에서 제정한 규정이 우선한다.</p> <p>- 철도관계법령 및 관련 규칙, 지침(<u>국토교통부</u>)</p>	<p>최근 규정류 및 기관명 반영</p>																												

현행	변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 -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 (국토해양부) - 근로기준법·시행령·시행규칙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지식경제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환경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 - 전기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지식경제부) -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지식경제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지식경제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시행규칙 (지식경제부) - 산업표준화법·시행령·시행규칙 (지식경제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지식경제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식경제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 - 산림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 - 측량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 (국토교통부) - 근로기준법·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 물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환경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전기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국토교통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표준화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산림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산림청) -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 측량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p>4.1.4 책임관리</p> <p>책임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 수행업무지침에 의거 관리·감독하며 사업시행자는 책임감리원의 지시</p>	<p>4.1.4 책임관리</p> <p>책임감리원은 건설진흥관리법에 따른 감리 수행업무지침에 의거 관리·감독하며 사업시행자는 책임감리원의 지시</p>	


현행	변경	사유
및 요구사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및 요구사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4.2 공사관리	4.2 공사관리	
<p>4.2.2 품질관리</p> <p>(2) 품질관리시험의 빈도와 시험방법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KS규격으로 시행한다.</p> <p>4.2.3 고정관리</p> <p>(8) 공사의 준공 및 확인</p> <p>② 공사의 준공 및 확인은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한국시설공단) 및 철도종합시험운행(국토해양부)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시행한다.</p> <p>③ 다만 본 사업의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국가의 방치변경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범위내에서 그 준공시기를 조장할 수 있다.</p> <p>4.2.5 안전관리</p> <p>(3) 공사 착공전에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안전관리체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체계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p>	<p>4.2.2 품질관리</p> <p>(2) 품질관리시험의 빈도와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KS규격으로 시행한다.</p> <p>4.2.3 고정관리</p> <p>(8) 공사의 준공 및 확인</p> <p>② 공사의 준공 및 확인은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철도종합시험운행(국토교통부)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시행한다.</p> <p>③ 다만 본 사업의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국가의 방치변경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범위내에서 그 준공시기를 조장할 수 있다.</p> <p>4.2.5 안전관리</p> <p>(3) 공사 착공전에 <u>건설기술진흥법</u>,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안전관리체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체계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p>	
II.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 성과요구수준서	II. <u>유지관리 및 운영</u> 부분 성과요구수준서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p>1.1 목적</p> <p>본 운영 및 유지관리부문 성과요구수준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제반 요구수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1.1 목적</p> <p>본 <u>유지관리 및 운영</u>부문 성과요구수준서는 <u>국토교통부</u>에서 시행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u>유지보수 및 운영</u>에 관련된 제반 요구수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현행	변경	사유																																				
<p>1.2 운영 및 유지관리 절차</p> <p>(1) 사업시행자는 동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하여 운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으로 확정한다.</p> <p>(2) 운영 및 유지관리의 평가방법은 정기적인 보고서와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등), 점검 등을 통하여 평가 한다.</p> <p>(3)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무관청은 서비스 이행실적을 확인 후 성과요구수준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지불한다.</p> <p>(6)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역무분야 관련사항(운임체계, 운임중수 및 정산, 대표관리 등)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임징수 및 정산방안, 역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7) 주무관청은 필요 시 실시협약 및 운영계획서에 기초한 「BTL운영매뉴얼」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에서 제시한 방법을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운영개시 단계에 BTL 사업(업무 및 시설의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p>	<p>1.2 운영 및 유지관리 절차</p> <p>(1) 사업시행자는 동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하여 <u>유지관리 및 운영계획</u>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으로 확정한다.</p> <p>(2) <u>유지관리 및 운영의</u> 평가방법은 정기적인 보고서와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등), 점검 등을 통하여 평가 한다.</p> <p>(3)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으로 정한 <u>유지관리 및 운영계획</u>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무관청은 서비스 이행실적을 확인 후 성과요구수준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지불한다.</p> <p>(6) 삭제</p> <p>(6) <u>주무관청은 필요 시 실시협약 및 운영계획서에 기초한 「BTL운영매뉴얼」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에서 제시한 방법을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운영개시 단계에 BTL 사업(업무 및 시설의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u></p>																																					
<p>1.3 업무분담 한계</p> <table border="1" data-bbox="135 1624 699 2083"> <thead> <tr> <th>구분</th> <th>사업시행자</th> <th>주무관청</th> </tr> </thead> <tbody> <tr> <td>운영</td> <td>· 역무업무 · 운임징수 및 납부 · 주무관청의 업무를 제외한 관련업무 전체</td> <td>· 열차운영 · 차량구매 및 차량검수·정비 · 통합관계 · 운전승무 및 운전취급 · 운임정산</td> </tr> <tr> <td>노반</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건물</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궤도</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전차선·전력</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운영	· 역무업무 · 운임징수 및 납부 · 주무관청의 업무를 제외한 관련업무 전체	· 열차운영 · 차량구매 및 차량검수·정비 · 통합관계 · 운전승무 및 운전취급 · 운임정산	노반	· 관련업무 전체		건물	· 관련업무 전체		궤도	· 관련업무 전체		전차선·전력	· 관련업무 전체		<p>1.3 업무분담 한계</p> <table border="1" data-bbox="730 1624 1294 2083"> <thead> <tr> <th>구분</th> <th>사업시행자</th> <th>주무관청</th> </tr> </thead> <tbody> <tr> <td>운영</td> <td>· 주무관청의 업무를 제외한 관련업무 전체</td> <td>· 통합관계 · 역무업무 · 운임징수 및 정산 · 열차운영(운전승무 및 운전취급) · 차량제공, 차량 검수·정비</td> </tr> <tr> <td>노반</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건물</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궤도</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전차선·전력</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운영	· 주무관청의 업무를 제외한 관련업무 전체	· 통합관계 · 역무업무 · 운임징수 및 정산 · 열차운영(운전승무 및 운전취급) · 차량제공, 차량 검수·정비	노반	· 관련업무 전체		건물	· 관련업무 전체		궤도	· 관련업무 전체		전차선·전력	· 관련업무 전체		
구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운영	· 역무업무 · 운임징수 및 납부 · 주무관청의 업무를 제외한 관련업무 전체	· 열차운영 · 차량구매 및 차량검수·정비 · 통합관계 · 운전승무 및 운전취급 · 운임정산																																				
노반	· 관련업무 전체																																					
건물	· 관련업무 전체																																					
궤도	· 관련업무 전체																																					
전차선·전력	· 관련업무 전체																																					
구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운영	· 주무관청의 업무를 제외한 관련업무 전체	· 통합관계 · 역무업무 · 운임징수 및 정산 · 열차운영(운전승무 및 운전취급) · 차량제공, 차량 검수·정비																																				
노반	· 관련업무 전체																																					
건물	· 관련업무 전체																																					
궤도	· 관련업무 전체																																					
전차선·전력	· 관련업무 전체																																					

현행			변경			사유
신호	· 관련업무 전체		신호	· 관련업무 전체		
통신	· 관련업무 전체		통신	· 관련업무 전체		
부대(부속) 시설	· 관련업무 전체		부대(부속) 시설	· 관련업무 전체		
2. 운영			2. 운영			
2.1 역무운영계획			2.1 <u>운영계획</u>			
2.1.1 운임체계 및 운임정산 (2) 운임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향후 연계노선을 포함한 열차운영사업자 선정시까지 주무관청에서 정하기로 한다.			2.1.1 운임체계 및 운임정산 (2) 운임정산을 위한 운임징수 시스템의 세부사항은 향후 연계노선을 포함한 열차운영사업자 선정시까지 주무관청에서 정하기로 한다.			
2.1.2 정거장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 (1) ~ (3)			2.1.2 삭제 (1) ~ (3) 삭제			
3. 유지관리			3. 유지관리			
3.2 궤도분야 (2) 궤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은 국토해양부 지침(선로정비지침, 선로점검지침, 보선작업지침 등)에 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궤도에 대한 기준은 준공기준, 유지관리 목표기준, 주의기준, 보수기준, 속도제한기준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2 궤도분야 (2) 궤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 수준은 국토교통부 지침(선로정비지침, 선로점검지침, 보선작업지침 등)에 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궤도에 대한 기준은 준공기준, 유지관리 목표기준, 주의기준, 보수기준, 속도제한기준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3 건물분야 3.3.1 건축설비 (2) 전기설비 관리 ⑦ 조명기구는 효율적이며, 에너지절감이 효과적으로 유지, 기준 조도이상 유지관리가 되도록 한다. (국토해양부 전철전력 시설 지침을 따르며 별도 명시되지 않는 곳은 KSA301에 따른다.)			3.3 건물분야 3.3.1 건축설비 (2) 전기설비 관리 ⑦ 조명기구는 효율적이며, 에너지절감이 효과적으로 유지, 기준 조도이상 유지관리가 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전철전력 시설 지침을 따르며 별도 명시되지 않는 곳은 KSA301에 따른다.)			
3.7 교통약자 편의시설 분야 (1) 사업시행자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에 의거 정거장의 여객취급설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3.7 교통약자 편의시설 분야 (1) 사업시행자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에 의거 정거장의 여객취급설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행	변경	사유
<p>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청각장애자를 위한 열차상황 안내표지, 시각 경보기 등 설치 운영</p> <p>④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가블럭 및 열차상황 안내방송 등을 설치 운영</p>	<p>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청각장애자를 위한 열차상황 안내표지, 시각 경보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p> <p>④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가블럭 및 열차상황 안내방송 등을 설치 및 유지관리</p>	
<p>Ⅲ. 성과의 점검 및 평가부문</p> <p>성과요구수준서</p>	<p>Ⅲ. 성과의 점검 및 평가부문</p> <p>성과요구수준서</p>	
1. 성과의 점검	1. 성과의 점검	
1.3 성과점검 항목	1.3 성과점검 항목	
<p>(1) 유용성 : 노반 및 여객이용시설, 정거장시설, 궤도, 전차선 및 전력설비, 신호 및 통신설비 등의 유지관리와 역무원의 교육훈련 등 시설물 사용상의 유용성 점검</p> <p>(2) 편리성 : 정거장 이용의 편리성, 매표대기시간,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등 승객이용 편리성에 대한 점검</p>	<p>(1) 유용성 : 노반 및 여객이용시설, 정거장시설, 궤도, 전차선 및 전력설비, 신호 및 통신설비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물 사용상의 유용성 점검</p> <p>(2) 편리성 : 정거장 이용의 편리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등 승객이용 편리성에 대한 점검</p>	
1.4 성과점검 세부항목 및 기준	1.4 성과점검 세부항목 및 기준	
<p>(1) 유용성</p> <p>⑦ 역무원 교육훈련</p> <p>가) ~ 나)</p> <p>⑧ 주무관청 시정요구사항</p>	<p>(1) 유용성</p> <p>⑦ 삭제</p> <p>가) ~ 나) 삭제</p> <p>⑦ 주무관청 시정요구사항</p>	
<p>(2) 편리성</p> <p>② 매표대기 시간</p> <p>가) ~ 나)</p> <p>③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가용성</p>	<p>(2) 편리성</p> <p>② 삭제</p> <p>가) ~ 나) 삭제</p> <p>②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가용성</p>	
<p>(3) 안전성</p> <p>⑤ 위기대처법 인지도</p> <p>가) 사업시행자는 불의의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역무원 및 모든 종사자에게 위기대처법을 인지시켜야 한다.</p>	<p>(3) 안전성</p> <p>⑤ 위기대처법 인지도</p> <p>가) 사업시행자는 불의의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종사자에게 위기대처법을 인지시켜야 한다.</p>	
<p>(4) 고객만족도</p> <p>③ 고객만족도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p>	<p>(4) 고객만족도</p> <p>③ 고객만족도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p>	

현행		변경		사유																	
<p>으로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고객만족도 조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정거장 운영부분</td> <td>기본적 서비스평가 쾌적성(정거장및 편의시설청결성, 정거장이용시 편안함, 질서확립), 정확성(역내 열차운행 정보전달), 안전성(역내 안전시설), 편리성(편의시설, 구입/예매/취소, 안내판 편리성)</td> </tr> <tr> <td>부가적 서비스평가 시스템(타 교통연계), 정보(정보접근용이성, 역내안내방송), 부가서비스(TV, LED전광판, 노선도)</td> </tr> <tr> <td>인적 서비스평가 전문성(운행관련 지식, 열차/시설물 관련 지식), 친절성, 대응성(대응의 신속성, 적극성)</td> </tr> <tr> <td>고객 인지가치 가격대비 품질 적정성, 품질대비 가격 적정성</td> </tr> <tr> <td rowspan="2">고객충성도</td> <td>운송사업체 인식 고객중심의 경영, 기업의 전반적 이미지, 제공서비스 본인과의 적절성</td> </tr> <tr> <td>고객충성도 재이용 의향, 타인추천 의향</td> </tr> <tr> <td>고객요구항목 조치사항</td> <td>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의 적절성</td> </tr> </tbody> </table>		항목	고객만족도 조사	정거장 운영부분	기본적 서비스평가 쾌적성(정거장및 편의시설청결성, 정거장이용시 편안함, 질서확립), 정확성(역내 열차운행 정보전달), 안전성(역내 안전시설), 편리성(편의시설, 구입/예매/취소, 안내판 편리성)	부가적 서비스평가 시스템(타 교통연계), 정보(정보접근용이성, 역내안내방송), 부가서비스(TV, LED전광판, 노선도)	인적 서비스평가 전문성(운행관련 지식, 열차/시설물 관련 지식), 친절성, 대응성(대응의 신속성, 적극성)	고객 인지가치 가격대비 품질 적정성, 품질대비 가격 적정성	고객충성도	운송사업체 인식 고객중심의 경영, 기업의 전반적 이미지, 제공서비스 본인과의 적절성	고객충성도 재이용 의향, 타인추천 의향	고객요구항목 조치사항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의 적절성	<p>으로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고객만족도 조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정거장 운영부분</td> <td>기본적 서비스평가 쾌적성(정거장및 편의시설청결성, 정거장이용시 편안함, 질서확립), 정확성(역내 열차운행 정보전달), 안전성(역내 안전시설), 편리성(편의시설, 구입, 안내판 편리성)</td> </tr> <tr> <td>고객요구항목 조치사항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의 적절성</td> </tr> </tbody> </table>		항목	고객만족도 조사	정거장 운영부분	기본적 서비스평가 쾌적성(정거장및 편의시설청결성, 정거장이용시 편안함, 질서확립), 정확성(역내 열차운행 정보전달), 안전성(역내 안전시설), 편리성(편의시설, 구입, 안내판 편리성)	고객요구항목 조치사항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의 적절성	
항목	고객만족도 조사																				
정거장 운영부분	기본적 서비스평가 쾌적성(정거장및 편의시설청결성, 정거장이용시 편안함, 질서확립), 정확성(역내 열차운행 정보전달), 안전성(역내 안전시설), 편리성(편의시설, 구입/예매/취소, 안내판 편리성)																				
	부가적 서비스평가 시스템(타 교통연계), 정보(정보접근용이성, 역내안내방송), 부가서비스(TV, LED전광판, 노선도)																				
	인적 서비스평가 전문성(운행관련 지식, 열차/시설물 관련 지식), 친절성, 대응성(대응의 신속성, 적극성)																				
	고객 인지가치 가격대비 품질 적정성, 품질대비 가격 적정성																				
고객충성도	운송사업체 인식 고객중심의 경영, 기업의 전반적 이미지, 제공서비스 본인과의 적절성																				
	고객충성도 재이용 의향, 타인추천 의향																				
고객요구항목 조치사항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의 적절성																				
항목	고객만족도 조사																				
정거장 운영부분	기본적 서비스평가 쾌적성(정거장및 편의시설청결성, 정거장이용시 편안함, 질서확립), 정확성(역내 열차운행 정보전달), 안전성(역내 안전시설), 편리성(편의시설, 구입, 안내판 편리성)																				
	고객요구항목 조치사항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의 적절성																				
2. 성과의 평가		2. 성과의 평가																			
2.3 세부 평가방법		2.3 세부 평가방법		산식 간소화																	
(1) 유용성		(1) 유용성																			
<p>① 노반 유지관리</p> <p>라) 서비스대가 지불을 위한 평가계산식은 다음과 같다.</p> $\frac{(\text{월간 노반시설손상 보고횟수} - \text{수리 미실시횟수})}{\text{월간 노반시설손상 보고횟수}} \geq 90\% \Rightarrow 100\%$ $\frac{(\text{월간 노반시설손상 보고횟수} - \text{수리 미실시횟수})}{\text{월간 노반시설손상 보고횟수}} < 90\%$ $\Rightarrow \frac{100}{90} \times \text{조사성과}(\%)$		<p>① 노반 유지관리</p> <p>라) 서비스대가 지불을 위한 평가계산식은 다음과 같다.</p> $\frac{(\text{월간 노반시설손상 보고횟수} - \text{수리 미실시횟수})}{\text{월간 노반시설손상 보고횟수}} \times \frac{100}{90}$ <p>단, 조사 성과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0%로 한다.</p>																			
<p>② 여객이용시설 유지관리</p> <p>라) 서비스대가 지불을 위한 평가계산식은 다음과 같다.</p> $\frac{(\text{월간 여객이용시설손상 보고횟수} - \text{수리 미실시횟수})}{\text{월간 여객이용시설손상 보고횟수}} \geq 90\% \Rightarrow 100\%$ $\frac{(\text{월간 여객이용시설손상 보고횟수} - \text{수리 미실시횟수})}{\text{월간 여객이용시설손상 보고횟수}} < 90\%$ $\Rightarrow \frac{100}{90} \times \text{조사성과}(\%)$		<p>② 여객이용시설 유지관리</p> <p>라) 서비스대가 지불을 위한 평가계산식은 다음과 같다.</p> $\frac{(\text{월간 여객이용시설손상 보고횟수} - \text{수리 미실시횟수})}{\text{월간 여객이용시설손상 보고횟수}} \times \frac{100}{90}$ <p>단, 조사 성과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0%로 한다.</p>																			
<p>③ 정거장 유지관리</p> <p>라) 서비스대가 지불을 위한 평가계산식은 다음과 같다.</p>		<p>③ 정거장 유지관리</p> <p>라) 서비스대가 지불을 위한 평가계산식은 다음과 같다.</p> $\frac{(\text{월간 여객이용시설손상 보고횟수} - \text{수리 미실시횟수})}{\text{월간 여객이용시설손상 보고횟수}} \times \frac{100}{90}$ <p>단, 조사 성과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0%로 한다.</p>																			

현행	변경	사유
<p>(월간 정거장시설손상 보고횟수-수리 미실시횟수) 월간 정거장시설손상 보고횟수 $\geq 90\% \Rightarrow 100\%$</p> <p>(월간 정거장시설손상 보고횟수-수리 미실시횟수) 월간 정거장시설손상 보고횟수 $< 90\%$</p> <p>$\Rightarrow \frac{100}{90} \times$ 조사성과(%)</p>		
<p>④ 궤도 유지관리</p> <p>라) 서비스대가 지불을 위한 평가계산식은 다음과 같다.</p> <p>(월간 궤도시설물손상 보고횟수-수리 미실시횟수) 월간 궤도시설물손상 보고횟수 $\geq 90\% \Rightarrow 100\%$</p> <p>(월간 궤도시설물손상 보고횟수-수리 미실시횟수) 월간 궤도시설물손상 보고횟수 $< 90\%$</p> <p>$\Rightarrow \frac{100}{90} \times$ 조사성과(%)</p>	<p>④ 궤도 유지관리</p> <p>라) 서비스대가 지불을 위한 평가계산식은 다음과 같다.</p> <p>(월간 궤도시설물손상 보고횟수-수리 미실시횟수) $\times \frac{100}{90}$ 월간 궤도시설물손상 보고횟수</p> <p>단, 조사 성과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0%로 한다.</p>	
<p>⑤ 전차선, 전력설비 유지관리</p> <p>라) 서비스대가 지불을 위한 평가계산식은 다음과 같다.</p> <p>(월간 전차선/전력설비 손상 보고횟수-수리 미실시횟수) 월간 전차선/전력설비 손상 보고횟수 $\geq 90\% \Rightarrow 100\%$</p> <p>(월간 전차선/전력설비 손상 보고횟수-수리 미실시횟수) 월간 전차선/전력설비 손상 보고횟수 $< 90\%$</p> <p>$\Rightarrow \frac{100}{90} \times$ 조사성과(%)</p>	<p>⑤ 전차선, 전력설비 유지관리</p> <p>라) 서비스대가 지불을 위한 평가계산식은 다음과 같다.</p> <p>(월간 전차선/전력설비 손상 보고횟수-수리 미실시횟수) $\times \frac{100}{90}$ 월간 전차선/전력설비 손상 보고횟수</p> <p>단, 조사 성과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0%로 한다.</p>	
<p>⑥ 신호, 통신설비 유지관리</p> <p>라) 서비스대가 지불을 위한 평가계산식은 다음과 같다.</p> <p>(월간 신호/통신설비 손상 보고횟수-수리 미실시횟수) 월간 신호/통신설비 손상 보고횟수 $\geq 90\% \Rightarrow 100\%$</p> <p>(월간 신호/통신설비 손상 보고횟수-수리 미실시횟수) 월간 신호/통신설비 손상 보고횟수 $< 90\%$</p> <p>$\Rightarrow \frac{100}{90} \times$ 조사성과(%)</p>	<p>⑥ 신호, 통신설비 유지관리</p> <p>라) 서비스대가 지불을 위한 평가계산식은 다음과 같다.</p> <p>(월간 신호/통신설비 손상 보고횟수-수리 미실시횟수) $\times \frac{100}{90}$ 월간 신호/통신설비 손상 보고횟수</p> <p>단, 조사 성과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0%로 한다.</p>	
<p>⑦ 역무원 교육훈련</p> <p>가) ~ 라)</p>	<p>⑦ 삭제</p> <p>가) ~ 라) 삭제</p>	
<p>⑧ 주무관청 시정요구사항</p> <p>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검토는 95%를 목표수준으로 한다.</p> <p>(월간 주무관청 시정요구 횟수-조치계획 미검토횟수) 월간 주무관청 시정요구 횟수 $\geq 95\% \Rightarrow 100\%$</p> <p>(월간 주무관청 시정요구 횟수-조치계획 미검토횟수) 월간 주무관청 시정요구 횟수 $< 95\%$</p> <p>$\Rightarrow \frac{100}{95} \times$ 조사성과(%)</p> <p>다) 시정요구사항 중 적절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실행은 100%를 목표수준으로 한다.</p> <p>(월간 시정조치필요 항목수-시정조치 미실시횟수) 월간 시정조치필요 항목수 $< 100\% \Rightarrow$ 조사성과(%)</p>	<p>⑦ 주무관청 시정요구사항</p> <p>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검토는 95%를 목표수준으로 한다.</p> <p>(월간 주무관청 시정요구횟수-조치계획 미검토횟수) $\times \frac{100}{95}$ 월간 주무관청 시정요구 횟수</p> <p>단, 조사 성과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0%로 한다.</p> <p>다) 시정요구사항 중 적절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실행은 100%를 목표수준으로 한다.</p> <p>(월간 시정조치필요 항목수-시정조치 미실시횟수) $\times \frac{100}{100}$ 월간 시정조치필요 항목수</p> <p>단, 조사 성과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0%로 한다.</p>	

현행	변경	사유
(2) 편리성	(2) 편리성	
<p>① 정거장이용의 편리성</p> <p>다) 정거장이용의 편리성은 가중치를 두어 평가한다.</p> $\left(\frac{\text{정거장 편의시설 가용개소 수}}{\text{정거장 전체 편의시설개소 수}} \right) \times 100(\%) \geq 90\% \Rightarrow 100\%$ $\left(\frac{\text{정거장 편의시설 가용개소 수}}{\text{정거장 전체 편의시설개소 수}} \right) \times 100(\%) < 90\% \Rightarrow \frac{100}{90} \times \text{조사성과}(\%)$	<p>① 정거장이용의 편리성</p> <p>다) 정거장이용의 편리성은 가중치를 두어 평가한다.</p> $\frac{\text{정거장 편의시설 가용개소 수}}{\text{정거장 전체 편의시설개소 수}} \times \frac{100}{90}$ <p>단, 조사 성과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0%로 한다</p>	
<p>② 대표대기시간</p> <p>가) ~ 마)</p>	<p>② 삭제</p> <p>가) ~ 마) 삭제</p>	
<p>③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가용성</p>	<p>②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가용성</p>	
(3) 안전성	(3) 안전성	
<p>④ 보안시설</p> <p>라) 서비스 대가 지불을 위한 평가계산식은 다음과 같다.</p> $\frac{(\text{월간 시설물손상 보고횟수} - 1\text{시간내 수리 미실시횟수})}{\text{월간 시설물손상 보고횟수}} \geq 95\% \Rightarrow 100\%$ $\frac{(\text{월간 시설물손상 보고횟수} - 1\text{시간내 수리 미실시횟수})}{\text{월간 시설물손상 보고횟수}} < 95\%$ $\Rightarrow \frac{100}{95} \times \text{조사성과}(\%)$	<p>④ 보안시설</p> <p>라) 서비스 대가 지불을 위한 평가계산식은 다음과 같다.</p> $\frac{(\text{월간 시설물손상 보고횟수} - 1\text{시간내 수리미실시횟수})}{\text{월간 시설물손상 보고횟수}} \times \frac{100}{95}$ <p>단, 조사성과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0%로 한다.</p>	 
<p>* 위기대처법 인지도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없음</p>	<p>(신설) ⑤ 위기대처법 인지도</p> <p>가) 종사자의 위기대처법 인지도는 서면평가로 한다.</p> <p>나)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교육시행하고, 서면 평가 시행하여 평균 90점 이상을 목표수준으로 한다.</p> <p>다) 서비스대가 지불을 위한 평가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p> $\text{서면평가 평균점수} \times \frac{100}{90}$ <p>단, 조사 성과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0%로 한다.</p>	
(4) 고객만족도	(4) 고객만족도	
<p>④ 열차운행과 정거장운용 부문은 기본적인 서비스 평가, 부가적 서비스 평가, 인적 서비스 평가, 고객인지가치 평가를 주요 항목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p>	<p>④ 정거장운용 부문은 기본적인 서비스 평가를 주요 항목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집계한다.</p>	

현행	변경	사유																																																																																																								
집계한다.																																																																																																										
3. 서비스 대가의 지불 3.1 평가결과의 가중치 적용	3. 서비스 대가의 지불 3.1 평가결과의 가중치 적용																																																																																																									
(2) 평가결과 가중치	(2) 평가결과 가중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th> <th>분</th> <th>가중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1. 유용성 (40)</td> <td>1) 노반 유지관리</td> <td>3</td> </tr> <tr> <td>2) 여객이용시설 유지관리</td> <td>7</td> </tr> <tr> <td>3) 정거장 유지관리</td> <td>7</td> </tr> <tr> <td>4) 궤도 유지관리</td> <td>5</td> </tr> <tr> <td>5) 전차선, 전력 유지관리</td> <td>4</td> </tr> <tr> <td>6) 신호, 통신 유지관리</td> <td>4</td> </tr> <tr> <td>7) 역무원 교육훈련</td> <td>2</td> </tr> <tr> <td>8) 주무관청 시정요구사항</td> <td>8</td> </tr> <tr> <td rowspan="3">2. 편리성 (10)</td> <td>1) 정거장이용의 편리성</td> <td>3</td> </tr> <tr> <td>2) 매표대기시간</td> <td>4</td> </tr> <tr> <td>3)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가용성</td> <td>3</td> </tr> <tr> <td rowspan="5">3. 안전성 (25)</td> <td>1) 정거장 안전시설 가용율</td> <td>5</td> </tr> <tr> <td>2) 열차운행 장애율</td> <td>5</td> </tr> <tr> <td>3) 사고처리</td> <td>5</td> </tr> <tr> <td>4) 보안시설</td> <td>5</td> </tr> <tr> <td>5) 위기대처법 인지도</td> <td>5</td> </tr> <tr> <td rowspan="6">4. 고객 만족도 (25)</td> <td rowspan="3">4.1 정거장운용부문(12)</td> <td>1) 기본적 서비스 평가</td> <td>5</td> </tr> <tr> <td>2) 부가적 서비스 평가</td> <td>3</td> </tr> <tr> <td>3) 인적 서비스 평가</td> <td>4</td> </tr> <tr> <td rowspan="2">4.2 고객충성도(7)</td> <td>1) 운송사업체 인식</td> <td>3</td> </tr> <tr> <td>2) 고객충성도</td> <td>4</td> </tr> <tr> <td>4.3 고객요구항목 조치사항(6)</td> <td></td> <td>6</td> </tr> <tr> <td colspan="2">계</td> <td>100</td> </tr> </tbody> </table>	구	분	가중치	1. 유용성 (40)	1) 노반 유지관리	3	2) 여객이용시설 유지관리	7	3) 정거장 유지관리	7	4) 궤도 유지관리	5	5) 전차선, 전력 유지관리	4	6) 신호, 통신 유지관리	4	7) 역무원 교육훈련	2	8) 주무관청 시정요구사항	8	2. 편리성 (10)	1) 정거장이용의 편리성	3	2) 매표대기시간	4	3)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가용성	3	3. 안전성 (25)	1) 정거장 안전시설 가용율	5	2) 열차운행 장애율	5	3) 사고처리	5	4) 보안시설	5	5) 위기대처법 인지도	5	4. 고객 만족도 (25)	4.1 정거장운용부문(12)	1) 기본적 서비스 평가	5	2) 부가적 서비스 평가	3	3) 인적 서비스 평가	4	4.2 고객충성도(7)	1) 운송사업체 인식	3	2) 고객충성도	4	4.3 고객요구항목 조치사항(6)		6	계		1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th> <th>분</th> <th>가중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1. 유용성 (44)</td> <td>1) 노반 유지관리</td> <td>3</td> </tr> <tr> <td>2) 여객이용시설 유지관리</td> <td>8</td> </tr> <tr> <td>3) 정거장 유지관리</td> <td>8</td> </tr> <tr> <td>4) 궤도 유지관리</td> <td>6</td> </tr> <tr> <td>5) 전차선, 전력 유지관리</td> <td>5</td> </tr> <tr> <td>6) 신호, 통신 유지관리</td> <td>5</td> </tr> <tr> <td>7) 주무관청 시정요구사항</td> <td>9</td> </tr> <tr> <td>8) 주무관청 시정요구사항</td> <td>9</td> </tr> <tr> <td rowspan="3">2. 편리성 (6)</td> <td>1) 정거장이용의 편리성</td> <td>3</td> </tr> <tr> <td>2)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가용성</td> <td>3</td> </tr> <tr> <td>3)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가용성</td> <td>3</td> </tr> <tr> <td rowspan="5">3. 안전성 (30)</td> <td>1) 정거장 안전시설 가용율</td> <td>6</td> </tr> <tr> <td>2) 열차운행 장애율</td> <td>6</td> </tr> <tr> <td>3) 사고처리</td> <td>6</td> </tr> <tr> <td>4) 보안시설</td> <td>6</td> </tr> <tr> <td>5) 위기대처법 인지도</td> <td>6</td> </tr> <tr> <td rowspan="2">4. 고객 만족도 (20)</td> <td rowspan="2">4.1 정거장운용부문(14)</td> <td>1) 기본적 서비스 평가</td> <td>14</td> </tr> <tr> <td>4.2 고객요구항목 조치사항(6)</td> <td>6</td> </tr> <tr> <td colspan="2">계</td> <td>100</td> </tr> </tbody> </table>	구	분	가중치	1. 유용성 (44)	1) 노반 유지관리	3	2) 여객이용시설 유지관리	8	3) 정거장 유지관리	8	4) 궤도 유지관리	6	5) 전차선, 전력 유지관리	5	6) 신호, 통신 유지관리	5	7) 주무관청 시정요구사항	9	8) 주무관청 시정요구사항	9	2. 편리성 (6)	1) 정거장이용의 편리성	3	2)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가용성	3	3)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가용성	3	3. 안전성 (30)	1) 정거장 안전시설 가용율	6	2) 열차운행 장애율	6	3) 사고처리	6	4) 보안시설	6	5) 위기대처법 인지도	6	4. 고객 만족도 (20)	4.1 정거장운용부문(14)	1) 기본적 서비스 평가	14	4.2 고객요구항목 조치사항(6)	6	계		100	
구	분	가중치																																																																																																								
1. 유용성 (40)	1) 노반 유지관리	3																																																																																																								
	2) 여객이용시설 유지관리	7																																																																																																								
	3) 정거장 유지관리	7																																																																																																								
	4) 궤도 유지관리	5																																																																																																								
	5) 전차선, 전력 유지관리	4																																																																																																								
	6) 신호, 통신 유지관리	4																																																																																																								
	7) 역무원 교육훈련	2																																																																																																								
	8) 주무관청 시정요구사항	8																																																																																																								
2. 편리성 (10)	1) 정거장이용의 편리성	3																																																																																																								
	2) 매표대기시간	4																																																																																																								
	3)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가용성	3																																																																																																								
3. 안전성 (25)	1) 정거장 안전시설 가용율	5																																																																																																								
	2) 열차운행 장애율	5																																																																																																								
	3) 사고처리	5																																																																																																								
	4) 보안시설	5																																																																																																								
	5) 위기대처법 인지도	5																																																																																																								
4. 고객 만족도 (25)	4.1 정거장운용부문(12)	1) 기본적 서비스 평가	5																																																																																																							
		2) 부가적 서비스 평가	3																																																																																																							
		3) 인적 서비스 평가	4																																																																																																							
	4.2 고객충성도(7)	1) 운송사업체 인식	3																																																																																																							
		2) 고객충성도	4																																																																																																							
	4.3 고객요구항목 조치사항(6)		6																																																																																																							
계		100																																																																																																								
구	분	가중치																																																																																																								
1. 유용성 (44)	1) 노반 유지관리	3																																																																																																								
	2) 여객이용시설 유지관리	8																																																																																																								
	3) 정거장 유지관리	8																																																																																																								
	4) 궤도 유지관리	6																																																																																																								
	5) 전차선, 전력 유지관리	5																																																																																																								
	6) 신호, 통신 유지관리	5																																																																																																								
	7) 주무관청 시정요구사항	9																																																																																																								
	8) 주무관청 시정요구사항	9																																																																																																								
2. 편리성 (6)	1) 정거장이용의 편리성	3																																																																																																								
	2)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가용성	3																																																																																																								
	3)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가용성	3																																																																																																								
3. 안전성 (30)	1) 정거장 안전시설 가용율	6																																																																																																								
	2) 열차운행 장애율	6																																																																																																								
	3) 사고처리	6																																																																																																								
	4) 보안시설	6																																																																																																								
	5) 위기대처법 인지도	6																																																																																																								
4. 고객 만족도 (20)	4.1 정거장운용부문(14)	1) 기본적 서비스 평가	14																																																																																																							
		4.2 고객요구항목 조치사항(6)	6																																																																																																							
계		100																																																																																																								
부록3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	부록3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																																																																																																									
제2조 (평가항목 및 가중치 적용)	제2조 (평가항목 및 가중치 적용)																																																																																																									
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유용성, 편리성, 안전성, 고객만족도의 가중치를 0.4, 0.1, 0.25, 0.25로 부여하여 서비스 대가 지불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유용성, 편리성, 안전성, 고객만족도의 가중치를 0.44, 0.06, 0.30, 0.20로 부여하여 서비스 대가 지불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